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기관의장
람	



제 649호 2019. 11. 14.(목)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48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485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인
입법예고 4
남해군 공고 제2019-1491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남해군 공고 제2019-149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남해군 공고 제2019-1502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고 제2019-1504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실시
계획(변경) 인가 공람ㆍ공고
남해군 공고 제2019-1516호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5
알 림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25호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
입법예고 58
회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48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9-133호(2019.10.24.)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9. 11. 14.

남 해 군 수

-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 관광·휴양시설용지
 - **가구번호 I (변경)**, 가구번호 Ⅱ,Ⅲ(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כ	가구면적(㎡)			획 지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ח א	기정	변경	변경후																			
							I -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500	-	500	분수광장															
					I -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2,099	-	2,099	어울림광장																	
					I -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705	-	705	어린이놀이터																	
				I -4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825	-	825	휴게쉼터 및 산책로																		
						I -5	이동면 화계리 74번지 일원	300	-	300	만남의 광장																
				F1 000	51,020	I -6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2,685	감)1,090	1,595	펜션(면적축소)																
	20 005	5 21,925	21 925			I -7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860	-	1,860	병영막사체험장																
	29,093		31,020	I -8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923	-	923	수영장																		
																		I -9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300	-	1,300	판매장 및 홍보체험관 (오기 정정)				
				I -10	이동면 신전리 748-1번지 일원	7,218	-	7,218	연꽃테마원																		
				I -11	이동면 신전리 798-3번지 일원	10,680	_	10,680	숙박단지																		
					I -12	이동면 화계리 79-5번지 일원	_	2,731	2,731	오토캠핑장(신설) ※남해군 시행																	
										_	_								_				I -13	이동면 신전리 743-3번지 일원	_	11,451	11,451
				I -14	이동면 신전리 743-1번지 일원	_	8,833	8,833	청소년야영장(신설) ※남해군 시행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1485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변경

현행: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변경: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나. 자활기금의 지원·대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규정
- 다. 자활기금의 대여 이자율 규정
- 라. 자활기금 대여금의 감면사유 규정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1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②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종합사회복지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5,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여신청)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남해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남해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해군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계획서
 - 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
 - 4. 자활기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서류와 지역 자활센터장의 추천서
-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하다)의 장과 기금차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금융기관이 남해군에 지급하는 차용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여 금리에 수탁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율을 차감한 금리로 한다.
 - 1. 대여금리 : 남해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0.1퍼센트 낮은 금리
 - 2. 수탁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 : 연1퍼센트 이하(단, 수요자의 연체이자는 수탁금 융기관이 받는다.)
 - 3. 대여기간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차용 받을 때 군수에게 자활기금차용증서(별지 제 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차용 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차용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차용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상·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기준) ① 자활기금 대여한도액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5천만 원, 개인 2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 ② 대여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지원 또는 대여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여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및 제4-1호, 제4-2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또는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군수에게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지급하여 야 하다.
 - ③ 기금의 지급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5조에 따라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 결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
 - 2.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여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대여에 대한 이자) ① 대여금의 대여이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가계일반대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② 남해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한다.
- 제9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남해군 자활기금 대여상환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대여금 상환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금의 반환) ① 군수는 대여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여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여대상자는 대여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면조치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화재.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등" 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채무자등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3. 채무자등이 5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② 채무자등이 조례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남해 군 자활기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감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④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남해군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

1. 신청구분 : 기금지원, 기금	대여			
2. 신 청 인 성명(법인, 단체명) :				
생 년 월 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남/여)		
주소 : 경남 남해군		(전화 :)	
3. 신청금액 : 금	원(₩)		
4. 사용계획 사용용도 : 사용기간 :				
5. 상환방법 : (대여의 경우에	만 기재)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선			·칙 제2조	의 규정에
		ų	월	일
	신청인	(인)		
11레그스 기귀				

남해군수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차용증서

1. 차용금액 : 금 원(₩)

2. 차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3. 이 자 율

차용금리 : 연 %

대여금리 : 연 %(대여신청자 적용금리)

4. 차용조건

이자납입: 매월 말일 년 거치 연1회 년 균등 분할 상환

남해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자활기금의 운용 및 위탁에 따른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은행 지점장(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년도 반기)

1. 총 괄 (단위 : 원)

		대여	현황	 회수	 ·현황		
구 분	차용금	대여액	미대여액	회수액	미회수액	연체액	비고
계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성 자금							
수급자 채용 기업 사업자금							
누 계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성 자금							
수급자 채용 기업 사업자금							

2. 대출자 및 회수자 현황

가. 대부자 명단

(단위 : 원)

연번	구	분	성	명	주	소	대출일시	대출금액	비고

구분란에는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 성자금,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구분 기재 나. 회수자 명단 (단위 :원)

구	분	성명	주	소	대부일	상환일	원금	이자	연체	비고
									이사	
	구 	구 분	구 분 성명	구 분 성명 주	구 분 성명 주 소	구 분 성명 주 소 대부일	구 분 성명 주 소 대부일 상환일	구 분 성명 주 소 대부일 상화일	구 분 성명 주 소 대부일 상환일	구 분 성명 주 소 대부일 상환일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구분란에는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 성자금,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구분 기재

3. 연체자 현황 (단위 : 원)

				연 체 액				연체			
연번	구	분	성명	주	소	대부일	계	원금	연체 이자	연체 사유	비고
							/ II 	<u>е</u> п	이자	, ,,	

구분란에는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 성자금,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구분 기재

작성일: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지원신청자용

자활기금 지원결정 사실통지서

1. 지원대상

성명(법인, 단체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남 남해군 (전화:)

2. 지원금액 : 금 원(₩)

3. 지원용도: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귀하(법인)를 년도 반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하니 기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자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별지 제4-1호 서식] 대여신청자용

자활기금 대여결정 사실통지서

1. 대여대상자

성명(법인, 단체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남 남해군 (전화:)

2. 대여금액 : 금 원(₩)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이 율:연 %

연체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적용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귀하(법인)를 년도 반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하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별지 제4-2호 서식] 은행용

자활기금 대여결정 사실통지서

1.	대	여	대	상지	ŀ

성명(법인, 단체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주소 : 경남 남해군 (전화 :)

2. 대여금액 : 금 원(₩)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대여의 경우에만 기재)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이 율:연 %

연체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적용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사 람(법인)을 년도 반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구 지급신청서	
, , , ,		
1. 신 청 인		
성명(법인, 단체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주소 : 경남 남해군	(전화 :)
2. 신청금액 : 금 원(₩)	
3. 사용계획		
사용용도 :		
사용기간 :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우용에 과하 조례 시해규?	[]] 제6주에 따
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급을 신		1] 110-4
더 커와 돈의 자물기고 시표를 건 	경합니다.	
	٠	ما ما
	년 독	일 일
	اه اخ ا ب	(6))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사업변경신청서

1. 신 청 인

성명(법인, 단체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남 남해군 (전화:)

2. 당초 사업계획

사업목적 :

사업기간:

사 업 비 :

3. 변경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남해군 자활기금 대여상환연장신청서

「남해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규칙」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신 청합니다.

- 다 음 -

□ 대여금 현황

사 업 명	대 여 금	대여받은	상	환 계	획	상환액	미상환액	비고
/ T H 경	수령일시	금 액	년	년	년	70선기	미경완객	P1 4

Г	7	6	ス)	- 2	나유	
1		ч	Δ	- ^	ᅡᅲ	•

□ 연장기한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남해군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남해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구비서류

남해군 자활기금 감면 신청서

	р п					
2] 5] A]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연 락 처				
감면대상	구 분	융 자 일 시				
대 여 금	대여원금	연체이자				
감면신청금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남해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9 - 1491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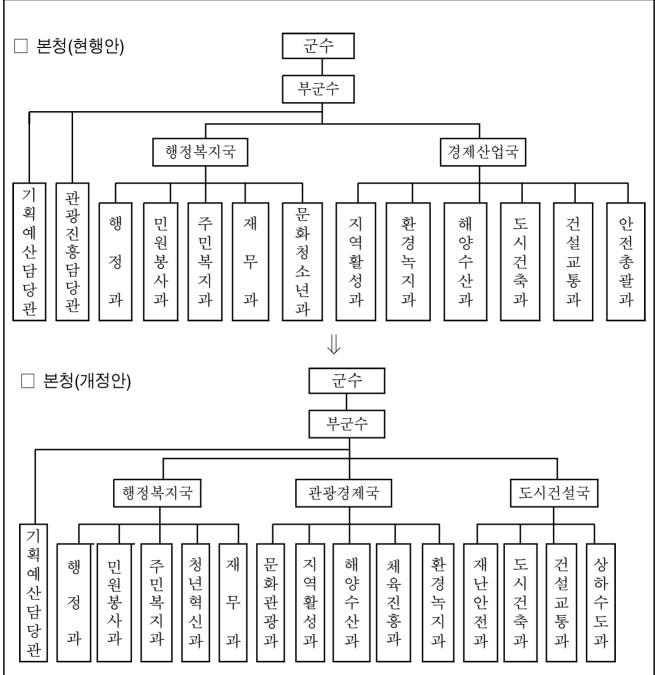
2019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3국(局)을 설치하고 환경 변화 및 국가(지역) 현안 수요의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을 설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폐지(제2조)
 - 폐지 :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나. 관광진흥담당관 폐지(제3조)
- 다. 1개 국(局) 추가 설치 및 부서 재편(안 제4조, 제5조~제6조)
 -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청년혁신과, 재무과
 -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환경녹지과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 라. 청년과혁신, 인구정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청년혁신과 신설(안 제5조)
- 마. 보건소의 소관사무 조정(안 제9조)
- 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 조정(안 제12조)
- 사. 직제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폐지함(제13조~제15조)
- 자. 조직개편 전후 비교
 - 당초 : 2국 2관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읍9면(135팀)
 - 변경 : 3국 1관 14과 2직속기관 1의회 1읍9면(140팀)



- ※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 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을 "예산, 전략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도시건설국"으로 하다.

제5조제1항 중 "재무과, 문화청소년과"를 "청년혁신과, 재무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 군민소통, 후생, 정보전산, 통신관제에 관한 사항
- 2. 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정보, 부동산등록에 관한 사항
- 3. 복지정책,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장사행정에 관한 사항
- 4. 청년과혁신, 남해정착지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
- 5. 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재산세,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
- 제6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환경녹지과를 둔다.
-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 1.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시설, 관광진흥,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사항
 - 2.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친환경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3. 수산기획, 어업지도, 양식산업, 연안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 4.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레포츠에 관한 사항
- 5.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보전, 환경시설, 공원녹지,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상하수 도과를 둔다.
 -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안전기획, 방재복구, 민방위,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2.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공공건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 3.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 4. 상수도 관리운영, 상수도, 하수도 관리운영, 하수도에 관한 사항
-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5. 의료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농업정책, 인력육성, 축산정책,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2. 유통수출, 먹거리순환, 농식품산업, 소득개발, 농촌자원에 관한 사항
- 3. 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작, 마늘, 농기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면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생 략)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u>농업기</u>	제2조(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업기</u>
술센터소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 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u>술센터소장</u>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u>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u> 을 둔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정책개 발과 군정기획·조정, <u>예산,</u> 홍보, 감사, 법무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u>예산, 전략개발,</u>
③ 관광진흥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관광마 케팅 및 기획, 관광개발, 관광축제, 관 광시설 및 운영으로 한다.	<u>〈삭 제〉</u>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 기 위하여 <u>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u> 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u>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도시건</u> <u>설국</u>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 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u>재무과,</u> <u>문화청소년과</u> 를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u>청년혁</u> 신과, 재무과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1. 조직·인사운영, 직원복지,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1. 행정, 군민소통, 후생, 정보전산, 통 신관제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 지적민원, 도로명주소 등 종합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정보, 부동 산등록에 관한 사항

- 3. 희망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군민복지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국·공유 재산관리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5. 문화예술, 문화재 보존·관리, 아 동·청소년 등 군민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 활성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 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를 둔 다.
 -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정책, 일자리 창출, 민간자본 투자유치·지원, 도시 재생,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2. 환경정책 및 기후변화, 폐기물처리,환경시설, 산림보전 등 환경과 산림에 관한 사항
 - 3. 수산행정기획 조정과 어업지도, 양식

 산업, 연안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건축민원, 복 합민원,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 5. 건설관리와 농촌개발, 농업기반 조

 성, 도로, 교통 등에 관한 사항
 - 6. 재난안전 관리정책 및 재난대응 총 괄, 재해복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3. 복지정책,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장 사행정에 관한 사항
- 4. 청년과혁신, 남해정착지원, 평생학 습, 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
- 5. 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재산세,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
-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문화 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 진흥과, 환경녹지과를 둔다.
- ② <u>관광경제국장</u>------
 - 1.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시설, 관광 진흥,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사항
 - 2.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친환경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3. 수산기획, 어업지도, 양식산업, 연안 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에 관한 사 항
 - 4.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레포츠에 과한 사항
 - 5.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보전, 환경 시설, 공원녹지,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삭 제〉

<u>〈신 설〉</u> 제6조의2(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 제9조(소관사무) ① ------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6. (생략)

② (생 략)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 장한다.

- 1. 농업ㆍ농촌 발전방안 기획 및 농지관리 에 관한 사항
- 2.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 4. 축산정책 및 축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 항
- 5.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관장한다.
- 1. 안전기획, 방재복구, 민방위, 하천관 리에 관한 사항
- 2.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공 공건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지 도에 관한 사항
- 3.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지도 에 관한 사항
- 4. 상수도관리운영, 상수도, 하수도관리 운영, 하수도에 관한 사항

- 1. ~ 4. (현행과 같음)
- 5. 의료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농업정책, 인력육성, 축산정책,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 2. 유통수출, 먹거리순환, 농식품산업, 소득개발, 농촌자원에 관한 사항
- 3. 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작, 마늘, 농기계관리에 관한 사항

- 6. 농촌진흥시책, 농업기술 홍보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 7. 체험마을 및 관광농업에 관한 사항
- 8.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의 · 식 · 주 등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 9. 농업기계화 촉진 및 임대 농업기계 등 관 리에 관한 사항
- 10.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11. 식량작물 생산 안정을 위한 새기술 보 급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12. 원예작물 및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 13.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생산 및 산업 화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 제13조(설치) 〈삭 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 제14조(소장) 〈삭 제〉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 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삭 제〉 를 관장한다.

- 1. 체육시설사업소
- 가. 체육행정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체육진흥 및 잔디산업에 관한 사항
- 다. 레포츠와 시설에 관한 사항
- 2. 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및 상하수도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 나.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삭 제〉

관한 사항 다. 하수도사업 추천 관한 사항	인 및 시설물 관리	<u>에</u>	

남해군 공고 제 2019 - 149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3국(局) 설치기준 마련
- 환경 변화 및 국가(지역) 현안수요의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 설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조례안 제2조)

- 총정원 607명 ⇒ 643명(증 3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94명 ⇒ 630명(증 36명)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조례안 제4조 별표 3)

직극	기관별 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기관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u>643</u>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u>613</u>						
	4급	4	4					
	5급	33	15	3	1	4	0	10
	6급이하 소계	<u>575</u>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07명"을 "6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4명"을 "6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	제2조(정원의 총수)
원 정원의 총수는 <u>607명</u> 으로 하되, 다	<u>643명</u>
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594명</u>	1 : <u>630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الرحة -	Hal	의 회	직설	키관	O Ed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읍·면
	총계	643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613					
	4급	4	4				
	5급	33	15	3	1	4	10
	6급이하 소계	575					
	전문 경력관	1					
	별정직	1					
	기 록 연구사	1					
	농 촌 지도사	2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설 보건소	금기관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습·면
총계	<u>607</u>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u>581</u>						
4급	3	3					
5급	33	13	3	1	4	2	10
6급이하 소계	<u>544</u>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3						

			개	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⁴ 보건소	증기관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u>643</u>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u>613</u>						
4급	4	4					
5급	33	15	3	1	4	0	10
6급이하 소계	<u>575</u>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남해군 공고 제2019-1502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 전화055-860-3467, 팩스 860-3703, e-mail : ms1128@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군수는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남해군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공고 제2019 - 1504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4.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643-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 명칭 :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468.6 m²

○ 규모 : L=60m, B=10.0~3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해군수(담당부서:문화청소년과)

○ 주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2019년 6월 15일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6개월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 7. 관계도서: 실음생략(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055-860-8623) 비치
- 8.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۲	일 련	소 재	기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則
ţ	컨 호	읍·리	지번	목	(m²)	면적 (m²)	주 소	명 성	권리명세서	고
	1	남해읍 차산리	643-4	잡	1,370.6	1,370.6		남해군	-	
	2	남해읍 차산리	821-1	도	7.0	7.0		남해군	-	
	3	남해읍 차산리	822-1	도	16.0	16.0	남해읍 북변리 389-4	김*민		
	4	남해읍 차산리	823-1	도	22.0	22.0	남해읍 아산리 388-1	이*일		
	5	남해읍 차산리	825-3	도	53.0	53.0	남해읍 차산리 712	김*욱		
	ठ	납계			1,468.6	1,468.6				

남해군 공고 제2019-1516호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주요내용

- 가. 문학의 섬의 목적ㆍ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나. 문학의 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11조)
- 다. 문학의 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21조)
- 라. 문학의 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안 제24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2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Pi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관광진흥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3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관광진흥담당관 문화재팀(전화 055-860-86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포 김만중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노도 문학의 섬"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문학관: 전시실, 세미나실, 북카페, 수장고 등 부대시설
- 나. 연수관: 작가창작실, 민속체험관
- 다. 야외공원: 사씨남정기원, 구운몽원, 서포초옥 등 부대시설
- 2. "사용료" 란 전시실, 세미나실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3. "관람료" 란 전시실 등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노도 문학의 섬(이하 "문학의 섬"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상주 면 양아리 산417-12에 둔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의 섬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문학의 섬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문학의 섬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군수에게 문학의 섬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설치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6조(보험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학의 섬 운영에 따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의 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문학의 섬의 관리 및 운영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 2. 수탁자가 관리위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학의 섬 시설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의 섬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문학의 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 3. 설날 및 추석 당일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11조(관람시간) 문학의 섬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 제12조(사용허가) ① 문학의 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도 문학의 섬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도 문학의 섬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① 문학의 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③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 2. 문학의 섬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 3.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문학의 섬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8조(관람료) ① 문학의 섬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
- 제19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련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3. 만 6세 이하인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 소지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 급자
 -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0조(관람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의 섬의 시설이나 전 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2조(목적 및 명칭) ① 문학의 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노도 문학의 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의 섬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문학의 섬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관리위탁에 한함)
 - 2.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의 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문학의 섬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24조(위원회의 대행) 위원회의 업무는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유배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학의 섬 사용료(제13조관련)

1. 문학관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요 금	비고
	오전	40,000	※ 사용시간
전시실	오후	60,000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종일	100,000	· 종일 09:00~18:00
	오전 40,000		※ 사용시간
세미나실	오후	60,000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종일	100,000	· 종일 09:00~18:00

2. 연수관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요 금	비고
지난기 하나지나시	비수기·평일(1박)	40,000	4인 기준
작가창작실 	성수기・주말(1박)	50,000	4인 기준
미소계청기	비수기·평일(1일)	40,000	
민속체험관	성수기·주말(1일)	50,000	

비고: 1. 성수기: 7월 ~ 8월

2. 주 말: 금, 토, 공휴일 전날

[별표 2]

문학관 전시실 관람료(제18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남해군민이	이 아닌 자	남해군민
⊤ च	개 인	단 체	급애인턴
어 린 이	1,000	500	무료
청소년·군경	1,500	1,000	무료
어 른	2,000	1,500	무료

1. 어린이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경 : 정복을 입은 군경(의무복무자에 한함)

4. 어 른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관람객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법인(단체)명			다	표자성명	
사 무 소			다	표자성별	남, 여
설 립 일			현	. 락 처	
주요사업내용					
소 유 재 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인 · 단체등록번호 :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 4. 운영계획서 1부.
-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116 11
[별지	제2호서식]		
	노도	문학의 섬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 인	성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시업자등록번호)	
사용	기본시설	문학관 (□ 전시설 □ 세미나실) 연수관 (□ 작가창작실 □ 민속체험관)	
시설	부대시설		
사용일	실시(기간)		
사	용목적		
刊	고		
	해군 노도 문 가를 신청합	·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니다.	ት 문학의 섬의
		년 월 일	
		다 큰 근	
		신청인	(인)
남형	배군수 귀ㅎ	 	

[這つ] 勿り又つ「言	[별ス	제3호서식]
-------------	-----	--------

노도 문학의 섬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처리 즉	기간 시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시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 시설	기본						
		시설 부속						
		시설						
	기	타						
변경사유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문학의 섬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알 림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25호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 혁명산업 중 급성장 중인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산업의체험학습, 교육을 통한 저변확대는 물론,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안 제4조)
- 나. 위·수탁관리(안 제5조)
- 다.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 라. 안전교육(안 제7조)
- 마. 예산의 지원(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1월 1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⑨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74, 팩스 055-860-37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체육시설사업소 레포츠팀(전화 055-860-8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무인비행장치" 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 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2.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 3.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 4.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 5.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지원
 - 6. 무인비행장치 교육, 대회, 행사 등
 - 7.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수탁관리)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 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 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